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15 발의연월일: 2024. 12. 12.

발 의 자:주철현・어기구・조계원

이건태 · 안호영 · 정성호

천하람 • 백승아 • 황명선

문금주 • 모경종 • 조인철

한정애 • 송기헌 • 민형배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훈련사업의 하나로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청년·여성 등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훈련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어촌으로의 신규 인력 유입 및 후계 어업인 양성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산업 종사자가 아니거나 어촌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을 교육훈련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미래어업인력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5호나목). 법률 제 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나목 중 "구성원"을 "구성원 또는 수산업 분야에 창업 •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교육훈련사업"이란 국가 및	5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			
술의 진흥을 위하여 하는 다			
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 •	나		
청년 • 여성 및 이와 관련			
된 단체의 <u>구성원</u> 에 대한	<u>구성원 또는 수산</u>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	업 분야에 창업ㆍ취업할		
훈련 사업	<u>의사가 있는 자 등</u>		
다. • 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